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9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서울시 서남권의 노인성 질환 전문 병원으로서 재활의료에 특화되어 성인 및 노인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개원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나. 재활 및 노인성질환진료 사례 경험이 풍부하고 병원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한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보고('17. 4. 21)로 진행되어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노인성 질환·재활 전문병원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달성하고 동시에 병원 경영이라는 수익성을 부가적으로 추구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공공의료 기관의 성공적 운영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재활 및 노인성질환,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 공공의료 확충사업 등 공공의료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신정동)
- 시설규모 : 대지 11,189.40㎡, 건물 39,262.5㎡(지하4층, 지상8층)
- 지원시설 :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 개원일자 : 2011년 5월



- **종별** : 병원
- **층고** : 지하4층, 지상8층
 - 외래부 : 진료실 검사실 재활의학센터 등
 - 병동부 : 알반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 **의료정보통합시스템** : EMR, PACS, CCS

마. 민간위탁기간

- 2017년 8월 27일 ~ 2020년 8월 26일(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총 9,457,322천원('18년 예산)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사 업 별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
합 계	9,087,763	9,457,322
민간위탁금	8,943,963	8,535,522
공공의료손실보전	8,366,129	7,680,000
무료간병 사업운영	407,664	466,815
백세건강센터	75,867	72,929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17,000	17,000
뇌혈관 튼튼 프로젝트	21,500	21,500
301 네트워크	50,803	277,278
학대피해노인 의료지원	5,000	-
민간대행사업비	143,800	921,800
의료장비 구입	143,800	100,000
노후 정보보안 장비 교체	-	135,300
웹 접근성 인증을 위한 고도화	-	16,500
서남병원 중환자실 확대운영	-	670,000

※ 세부 산출근거 : 붙임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보건의료정책과-11439. '17.4.5)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박춘중 (☎2133 - 7517)

붙임 : 1

- 산출근거

「운영보조금」

▶ 공공의료 손실보전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의료 손실보전	8,257,000	8,363,223	8,366,129	7,680,000

▶ 무료간병 사업운영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운영비	466,815	466,815	· 15병상 12명 근무
계	466,815		-

▶ 백세건강센터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인건비	35,529	35,529	· 영양사(1명) : 35,529천원
운영비	9,900	9,900	· 백세건강증진교실 : 2,400천원 · 백세건강증진레터 : 1,200천원 · 백세건강플래너 : 300천원 · 외래/입원프로그램 운영비 : 6,000천원
진료 지원비	27,500	27,500	· 외래 프로그램 : 20,000천원 · 입원 프로그램 : 7,500천원
계	72,929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진료 지원비	17,000	17,000	· 진료지원비 : 17,000천원
계	17,000		

▶ 뇌혈관 튼튼 프로젝트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진료 지원비	21,500	21,500	· 진료지원비 : 21,500천원
계	21,500		

▶ 301네트워크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인건비	276,278	276,278	· 의사(1명), 간호사(2명), 사회복지사(2명)
운영비	1,000	1,000	· 소모품 및 인쇄물 제작, 간담회 진행
계	277,278		

「자본보조금」

▶ 의료장비 구입

(단위 : 천원)

연번	의료장비명	수량	단가	금액
1	C-arm	1	65,000	65,000
2	ABR검사기	1	35,000	35,000
계				100,000

▶ 노후 정보보안 장비 교체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공기구비품	135,300	135,300	·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SSL VPN 1set
계	135,300		

▶ 웹 접근성 인증을 위한 고도화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개발비	16,500	16,500	· 웹접근성 인증을 위한 고도화 사업
계	16,500		

▶ 서남병원 중환자실 확대운영(진료공간 확장 및 시설개선사업)

(단위 : 천원)

구분	계	보조금	산출 내역
건물	424,780	424,780	· 건축/기계/소방/전기/통신 공사비 등
의료장비	208,370	208,370	· Air mattress + Pump 외 9건
공기구비품	36,850	36,850	· 노트북 외 12건
계	670,000		